

주주님께

## 제 29 기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맥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회사는 정관 제 19 조의 의거 제 29 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6년 7월 29일(금요일) 오전 09시 00분

2. 장 소 :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189 중소기업 DMC 타워 3층 대회의실

3. 회의 목적 사항

가. 부의안건

제 1 호 의안 : 정관일부변경의 건(별첨)

제 2 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별첨)

4. 경영참고사항 등의 비치

상법 제 542 조의 4 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기재하고 당사,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 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

나. 대리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2016년 7월 일

주식회사 주연테크  
대표이사 김 희 라 (직인생략)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은 행 장 김 종 준  
직무대행자 김 병 호

# 위 임 장

대 리 인	성명	
	주소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사항을 위임함.

- 다 음 -

2016년 7월 29일(금) 오전 09시 00분에 개최되는 주식회사 주연테크의 제 29기 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

2016년 7월 일

주주(위임자) 주민등록번호 :

소 유 주 식 수 :

주 소 :

성 명 : (인)

주 1) 당일 접수시에 본 위임장과 함께 참석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접수처에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2) 원활한 주총 진행을 위하여 당일 대리인으로 참석하시는 분은 개최시간 30분 전까지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첨)

제 2 호 의안 정관일부 변경 승인의 건

현 행	개 정 (안)	사유
<p>제 2 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판매 및 동 대행업</li> <li>2.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입업</li> <li>3.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및 동 대행업</li> <li>4. 소프트웨어 수출입업</li> <li>5. 통신장비 개발, 제조 및 수출입업</li> <li>6. 전기, 전자 제품 및 부품의 제조, 판매 및 동 대행업</li> <li>7. 전기, 전자 제품 및 부품의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li> <li>8. 인터넷 개발 및 콘텐츠사업</li> <li>9. 인터넷 정보서비스업</li> <li>10. 네트워크 관련 판매 및 유지보수업</li> <li>11.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관련업</li> <li>12. 정보의 제공 및 판매업</li> <li>13. 정보통신사업</li> <li>14. 자동차판매업</li> <li>15. 자동차수리업</li> <li>16. 운수장비 임대업</li> <li>17. 상기 각호에 관련하는 수리, 보수 및 서비스업</li> <li>18. 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 판매업</li> <li>19. 기업컨설팅 및 업무대행업</li> <li>20. 벤처기업 투자 및 투자자문업</li> <li>21. 장외유가증권 등의 매매 및 매매중개업</li> <li>22. 금융중재 및 관련 서비스 제공업</li> <li>23. 기타 금융업</li> <li>24. 교육사업</li> <li>25. 학원사업</li> <li>26. 기술도입의 알선 및 판매업</li> <li>27. 서비스 인력 제공 및 중개업</li> <li>28. 종합리스업</li> <li>29. 신용판매 금융업</li> <li>30. 문화예술 서비스업</li> <li>31. 완구 및 장난감 제조 및 도소매업</li> <li>32. 완구 및 장난감 수출입업</li> <li>33.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li> <li>34. 주택 건설, 분양 및 임대업</li> <li>35. 상가운영 및 임대업</li> <li>36. 해외공사 수주업</li> <li>37. 공산품의 원료와 제품의 판매업 및 동 대행업</li> <li>38. 해운업</li> <li>39. 전자상거래업</li> <li>40. 별정통신업, 전기통신사업 및 정보통신사업</li> <li>41. 전기자동차 인프라 공급 및 유지보수업</li> <li>42.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개발 및 공급설치업</li> <li>43. 전기자동차 임대업</li> <li>44. 위 각호에 관련되는 일체의 사업</li> </ol>	<p>제 2 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판매 및 동 대행업</li> <li>2.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입업</li> <li>3.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및 동 대행업</li> <li>4. 소프트웨어 수출입업</li> <li>5. 통신장비 개발, 제조 및 수출입업</li> <li>6. 전기, 전자 제품 및 부품의 제조, 판매 및 동 대행업</li> <li>7. 전기, 전자 제품 및 부품의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li> <li>8. 인터넷 개발 및 콘텐츠사업</li> <li>9. 인터넷 정보서비스업</li> <li>10. 네트워크 관련 판매 및 유지보수업</li> <li>11.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관련업</li> <li>12. 정보의 제공 및 판매업</li> <li>13. 정보통신사업</li> <li>14.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li> <li>15. 상가운영 및 임대업</li> <li>16. 가상현실(VR)영상기기 및 영상게임기 제조업</li> <li>17. 가상현실(VR)솔루션, 방송장비 제조업</li> <li>18. 가상현실(VR)시스템 및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li> <li>19. VR Cafe 프랜차이즈 운영 및 창업컨설팅</li> <li>20. CCTV 및 기타 영상감시장치 등 제조 및 판매업</li> <li>21. CCTV 및 기타영상감시장치 등 수출입업</li> <li>22. 바이오매스 연구, 제조 및 판매업</li> <li>23. 바이오매스 수출입업</li> <li>24. 위 각호에 관련되는 일체의 사업</li> </ol>	<p>영위하지 않는 사업목적 폐기 및 신규 사업 추가</p>
<p>제 18 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사장)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사장)가 유고시에는 제 34 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 18 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 34 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p>

<p>제 21 조(의장)</p> <p>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사장)로 한다.</p> <p>② 대표이사(사장)가 유고시에는 제 34 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 21 조(의장)</p> <p>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 소집결의 이사회에서 정한 자로 한다</p>	-
<p>제 33 조(대표이사 등의 선임)</p> <p>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사장) 1 명,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p>	<p>제 33 조(대표이사 등의 선임)</p> <p>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1 명이 상 선임할 수 있다.</p> <p>②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및 상무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p>	-
<p>제 34 조(이사의 직무)</p> <p>① 대표이사(사장)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 34 조(이사의 직무)</p> <p>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p>	-
<p>제 35 조(이사회 구성과 소집)</p> <p>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p> <p>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2 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p> <p>③ 이사회의 의장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p>	<p>제 35 조(이사회 구성과 소집)</p> <p>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p> <p>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2 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p> <p>③ 이사회의 의장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p>	-
<p>제 43 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p> <p>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 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차대조표</li> <li>2. 손익계산서</li> <li>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li> </ol> <p>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p> <p>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 주간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제 1 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 1 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li> <li>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li> </ol> <p>⑤ 제 4 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 대표이사는 제 1 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⑥ 대표이사(사장)는 제 1 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p>	<p>제 43 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p> <p>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 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차대조표</li> <li>2. 손익계산서</li> <li>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li> </ol> <p>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p> <p>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 주간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제 1 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 1 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li> <li>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li> </ol> <p>⑤ 제 4 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 대표이사는 제 1 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⑥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p>	-

<p>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 주간 전부터 본사에 5 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p> <p>⑦ 대표이사(사장)는 제 1 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 4 항에 의한 이사회 승인을 얻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p>	<p>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 주간 전부터 본사에 5 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p> <p>⑦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 4 항에 의한 이사회 승인을 얻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p>	
	<p>부 칙</p> <p>이 개정정관은 2016 년 07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p>	

제 2호 의안 이사선임 승인의 건

성명(생년월일)	임기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 거래내역	비고
김상범 (67.11.07)	3년	넥슨 이사	이사회	없음	사내이사
김철범 (65.06.23)	3년	한화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 우리자산운용 자산운용총괄 전무 KB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센터장 한국투자신탁운용 주식운용본부 리 서치담당 본부장, 상무	이사회	없음	사내이사
이정준 (67.03.02)	3년	(주)화평홀딩스 이사 고려대학교 교우회 상임이사	이사회	없음	사내이사
윤홍선 (49.01.12)	3년	에이티투자자문 회장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이사장 한국자치경영협회 회장 국무총리실 정무수석	이사회	없음	사외이사
권오룡 (52.06.10)	3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행정자치부 제 1 차관 행정자치부 차관보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비서관 행정자치부 행정관리국장 제 16 회 행정고시 합격	이사회	없음	사외이사